

의안번호	2207255
의 퇴 인	송재봉의원
회 답 일	2025.2.17.
추계번호	25D0588

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공공은행에 출자하고 지역금융위원회 및 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,170억 5,6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2,182억 8,000만원(연평균 436억 5,6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평균
지역공공은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(안 제6조)	216,750	—	—	—	—	216,750	43,350
지역금융위원회 설치운영 (안 제18조) 및 기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(안 제28조)	306	306	306	306	306	1,530	306
합계	217,056	306	306	306	306	218,280	43,656

주: 1.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2. 본 추계 결과는 지역공공은행 설립 수, 각 은행의 자본금·출자비율 등에 대한 가정을 전제로 추계한 것으로 향후 지역별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출자 현황 등에 따라 재정소요액이 달라질 수 있음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조 (자본금)	—지역공공은행의 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되, 설립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함	의무규정
2	안 제18조(지역금융위원회 설치) 및 안 제19조(위원회 구성)	—지역공공은행의 적절한 운영에 필요한 정관에 관한 사항, 감사의 임면 등을 심의·자문·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금융위원회를 둠 —지역금융위원회는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민간위원의 수가 3분의 2 이상이어야 함 —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됨	의무규정

3	안 제28조(예금 자보호기금의 설 치 등) 및 안 제 29조(기금의 조 성·운용 등)	-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공은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로 예금 등 채무의 원리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금액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·운영함(제28조제1항) -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정부, 한국은행, 금융기관 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함(제29조) -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·결정하기 위하여 기금 관리위원회를 둠(제28조제3항)	의무규정
4	안 제37조(감독) 및 안 제39 조(보고서의 제 출 및 서류의 검 사)	-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공은행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감독하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 -지방자치단체는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역공공은행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 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음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6조(자본금)		○	-
2	안 제18조(지역금융 위원회 설치) 및 안 제19조(위원회 구 성)		○	-
3	안 제28조 (예금자보호 기금의 설치 등) 및 안 제 29조(기금 의 조성·운 용 등)	예금자 보호기금 설치	×	지방자치단체가 대신하여 예금 등의 지방은행 채무 원리금 을 변제해야 하는 사유 및 보장한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 고 있어 지급불능이 될 지역공공은행 수, 해당 은행의 예금 채무 원리금 총액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
		기금관리 위원회 구성	○	
4	안 제37조(감독) 및 안 제39조(보고서의 제출 및 서류의 검사)		-	미대상: 지역공공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감사업무 수행기관에서 출연기관, 출연금 집행에 관 한 사항등을 감사·감독하고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지역공공은행이 설립될 지방자치단체의 수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,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(시·도)에 1개씩 설치된다고 가정
 - 기초지방자치단체(시·군·구)에는 지역공공은행이 설립되지 않는다고 가정
- 안 제6조에 따른 각 지역공공은행의 총 자본금은 「은행법」에 따른 지방은행¹⁾의 최저자본금²⁾을 준용하여 250억원이라고 가정
 - 자본금 중 시·도의 출자비율은 100분의 51으로 가정하고, 2026년에 전액 출자한다고 가정
- 안 제18조 및 안 제28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지역금융위원회와 기금관리위원회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1개씩 설치된다고 가정
 - 지역금융위원회 위원 수는 20명으로 가정하고, 20명 중 민간위원의 수는 14명으로 가정
 - 기금관리위원회 위원 수는 주요 지방자치단체 기금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원 수를 10명 이내로 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10명으로 가정하고, 10명 중 민간위원 수는 4명³⁾으로 가정
 - 위원에게 지급되는 회의참석 및 안전검토 수당은 회당 25만원으로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다고 가정
-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

1) 「은행법」 제2조의 정의에 따르면,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은행을 말함

2) 「은행법」 제8조(은행업의 인가) ①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은행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
1.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일 것. 다만, 지방은행의 자본금은 250억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.

3) 행전안전부 예규 「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있음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지역공공은행에 대한 자본금 출자(안 제6조)

- 추계의 전제에 따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지역공공은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은 1개소당 127억 5,000만원임
 - 출자금은 2026년에만 발생
- 17개 지역공공은행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,167억 5,0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2]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공공은행에 대한 출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
자본금 총액(A)	25,000	—	—	—	—
출자비율(B)	51%	—	—	—	—
1개소당 출자금 (C=A×B)	12,750	—	—	—	—
지역공공은행 수(D)	17	—	—	—	—
출자금 합계(E=C×D)	216,750	—	—	—	—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지역금융위원회 및 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(안 제18조 및 안 제28조)

- 추계의 전제에 따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역금융위원회 및 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금융위원회 1개소당 1,400만원, 기금관리위원회 1개소당 400만원임
 - 추계의 전제에 따라 민간위원에게 회당 25만원의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연 4회 회의를 한다고 가정
-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역금융위원회 및 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3억 6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5억 3,0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3] 지역금융위원회 및 기금관리위원회 설치·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지역금융 위원회 운영비	1개소당 운영비(a)	14	14	14	14	14	70
	위원회 수(b)	17	17	17	17	17	17
	소계(c=a×b)	238	238	238	238	238	1,190
기금관리 위원회 운영비	1개소당 운영비(d)	4	4	4	4	4	20
	위원회 수(e)	17	17	17	17	17	17
	소계(f=d×e)	68	68	68	68	68	340
지역금융위원회 및 기금관리위원회 운영비 합계(g=c+f)		306	306	306	306	306	1,53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다. 추계 결과

- 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공공은행에 출자하고 지역금융위원회 및 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,170억 5,6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2,182억 8,0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4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지역공공은행에 대한 출자	216,750	—	—	—	—	216,750
지역금융위원회 및 기금관리위원회 설치·운영	306	306	306	306	306	1,530
합 계	217,056	306	306	306	306	218,28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- 본 추계 결과는 지역공공은행 설립 수, 각 은행의 자본금·출자비율 등에 대한 가정을 전제로 추계한 것으로 향후 지역별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출자 현황 등에 따라 재정소요액이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임홍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홍연	02-6788-4673	limhy@nabo.go.kr